

시설대여규정(3-1-5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설대여) 본 대학교 시설을 대여할 때에는 학사업무, 본 대학교 행사 및 기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대여하되 본 대학교 시설의 파손 또는 오손을 대비하여 주최측의 대표자와 실비변상을 위한 사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.

제3조(대여의 제한) 시설물은 본 대학교 건학이념과 대학 교육의 목표 구현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한 대여는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.

제4조(대여시설) 본 대학교의 대여시설은 다음과 같다.

1. 운동장
2. 강당
3. 강의장
4. 기타

제5조(대여신청) 본 대학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소정양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 승인 신청서(별지 제1호)를 총무팀에 제출하여 총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개정 2002.3.1, 2007.3.5)

제6조(준수사항) 본 대학교의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내부구조 변경 금지
2. 학교내 취사 및 기거 금지
3. 소정의 사용료 납부(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)(개정 2002.3.1)
4. 승인지역 이외의 출입제한
5. 규정된 대여시간 준수
6. 기구 및 비품 등의 훼손, 분실시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
7. 실내에서는 금연 및 청결유지

제7조(관리) 본 대학교의 시설대여 업무는 총무처 총무팀에서 관장한다.(개정 2007.3.5)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 1호)

시설물 사용승인 신청서

결	담 당	파트장	팀 장	처 장
재				

시 설 명				
사 용 자	단 체 명			대 표 자
	주 소			전 화
	목 적			인 원
	일 시	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()시간		

- ※ 사용자 준수사항 : ① 학교내 취사, 음주, 가무 및 기거 행위 금지
 ② 실내 금연 및 청결 유지
 ③ 시설물의 파손 및 원형 변경 불가(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)

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위와 같이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오니
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단 체 명 :

대 표 자 :

건양대학교 총무처장 귀하

※본 신청서는 시설물 사용 1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승 인 서

단 체 명 :

대 표 자 :

사용시간 :

신청한 _____ 시설물 사용을 승인함.

- ※ 사용자 준수사항 : ① 학교내 취사, 음주, 가무 및 기거 행위 금지
 ② 실내 금연 및 청결 유지
 ③ 시설물의 파손 및 원형 변경 불가(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)

년 월 일

건양대학교 총무처장 (인)